[별표] <신설 2015.6.12>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협회”)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제9조 및 실무운용지침 (이하 “지침”) 제9조에 의거 협회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비정산 내역서를 검토하여 회원사를 대신하여 회원사가 지정한 학술대회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함. 협회는 참가자의 실비정산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 관광, 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검토 하도록 함.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용지침	협회내부규정
1	지원자격	(규약 9.2.2.)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	(지침 9.1) · 발표자는 포스터 발표자를 포함하나 e-포스터 발표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 발표자는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함.	① 참석자는 지원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초청장, 초록채택 메일, 프로그램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초록채택 메일, 또는 프로그램 등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 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실제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하나의 학술대회 당 (단, 하나의 학술대회가 여러 개의 코스, 강좌, 세션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각 코스, 강좌 또는 세션 당)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③ 해당 학술대회의 회장 또는 운영진으로서 단순 개회사의 발표는 지원되지 아니함.
2	지원대상 학술대회	(규약 9.1) 9.1조의 기관, 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	-
3	지원항목 기본 원칙	(규약 9.2.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 관광, 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 전문가의 동반자에	-	-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함.		
4	등록비		(지침 9.5.2) · 사전등록 원칙 ·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 영수증의 금액 적용	① 원칙적으로 학술대회의 기본 등록비만 지원되고, 기본등록비 외 다른 항목(태블릿 PC 등 기기대여료, 교재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함. 다만, 학술대회가 여러 개의 코스, 강좌, 세션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 코스, 강좌 또는 세션 별로 등록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가 그 코스, 강좌, 또는 세션에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② 사전등록 원칙의 경우 그 기준이 각 학술대회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③ Reception, Lunch/Dinner meeting, Gala Party의 참석비는 등록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무운용지침 9.5.3에 따라 규정된 한도 내에서 식비로 지원 가능함(상세 지출내역서에 식비로 포함시켜 기재요망). ④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는 지원 불가함. 다만 회원가입비와 등록비를 합한 금액이 비회원 등록비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5	교통비 (국외개최 학술대회)		(지침 9.5.1)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 (지침 9.5.5) ·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로 한	① 참석자가 동일 국가(또는 유럽 내 국가와 같이 인접한 국가)에서 시기가 인접한 복수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복수의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어 협회로부터 복수의 학술대회에 대하여 모두 참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여정(인천-제1학회 개최지-제2학회 개최지-인천간 항공권)에 대하여 항공비 지원 가능함. ② 참석자가 인접한 기간 동안 복수의 학술대회를 참석하고, 그 중 일부의 학술대회에 대해서만 당 협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한국(인천)에서 협회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학술대회(이하 “협회지원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도시(이하 “개최지”)까지의 편도 항공요금 및 개최지에서 협회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학술대회(이하 “비지원 학술대회”) 개최지역까지의 항공요금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비지원 학술대회 개최지역로부터 한국(인천)으로 귀국하는 항공요금은 지원 불가함. 만약, 전체 여정으로 발권을

			정)로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하여 한국(인천) - 협회지원학술대회 개최지 - 비지원 학술대회 개최지 구간의 항공운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전체 여정 운임의 2분의 1만 지원 가능함. ③ 원칙적으로, 개최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국하는 경우 또는 개최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개최지에서 출/도착한 편도 여정만 지원 가능하고 항공 운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운임의 2분의 1만 지원 가능함. (예를 들어 LA가 개최지인데, 인천-라스베가스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인천-LA로 출국하였으나, 귀국은 라스베가스-인천의 여정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여정은 학술대회 개최지인 LA에서 출국/귀국한 편도이거나 운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여정 중 2분의 1만 지원 가능함.)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최지까지의 직항이 없거나 직항의 여정이 학술대회 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여정의 항공 또는 개최지로부터 인접한 도시까지의 항공을 이용할 수 있음. 협회는 사유서를 검토하여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유 또는 인접한 도시로의 출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다만 어떤 경우라도 경유지 또는 인접한 도시에서 2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경유라고 보지 아니함. 인접한 지역이라 함은 Google Map(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기준 이동시간(자동차 또는 대중교통 추천경로 최단시간 기준)이 3시간 이내의 경우로 함. ⑤ 해외에 거주 중인 참석자가 개최지로 이동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거주지부터 학술대회 개최지 까지의 왕복 항공권만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운임은 지원되지 않음. ⑥ 항공 목적지가 학술대회 개최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여정이 여행, 관광, 여가활동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다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기 기준 해당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3개월 유효 항공권 기준) 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지 못함. ⑦ 항공 여정은 학술대회 시작일 2일 전(출국지 기준)부터 학술대

				회 종료 후 2일(귀국지 기준)의 일정에 해당되어야 함. 학술대회 공식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학술대회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제 참석한 기간 시작일 2일 전부터 종료 후 2일의 일정에 해당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학술대회는 5월 5일부터 5월 10일 기간이고, 참석자는 실제 5월 6일만 참석하는 경우에 항공비 지원 가능한 범위는 5월 4일에 출국하여 5월 8일에 귀국하는 일정 내에 해당하여야 함.) 출발편 또는 귀국편이 각각 해당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각 편도 요금의 50%를 차감함. 즉, 출발편이 3일 전에 출국하고 귀국편은 2일 후에 귀국하는 경우 출발편이 지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전체 요금의 25% 차감함. 전체 여정이 지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50% 차감함. 단, 그 일정 사이에 항공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항공 여정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협회가 검토 후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⑧ 협회 지원을 받지 못하는 Pre-course의 수강을 위하여 정규 학술대회 일정보다 3일 전 또는 그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Pre-course의 수강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Pre-course 기간 만큼 출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협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Pre-course 수강을 위한 출국의 경우 학술대회 기간은 Pre-course의 시작일로 간주함. (Pre-course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비 부분 참고. Pre-course 기간의 숙박비에 대해서는 숙박비 부분 참고.) ⑨ 현지 렌터카 또는 주차비의 경우 출발지 및 도착지에 대한 명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 불가함. ⑩ 비자발급 비용 및 여행사 수수료는 지원대상 아님. ⑪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공항버스/택시)는 지원 불가하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참석자가 인천 공항까지 이동을 위하여 이용한 국내 항공비는 지원 가능함. ⑫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편 일정 변경 시 동일 항공사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변경 수수료 및 추가 금액은 지원 가능함(이코노미 항공권만 가능). 만약,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존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재발권 하는 경우 편도요금이 적용되어 항공권 요금이 상승하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의 왕복요금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천재지변은 항공사 파업, 자연재해 등 개별 사안 별로 협회가 판단하도록 함. ⑬ 항공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호텔비 및 등록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참석 확인이 가능한 보딩 패스(사본 가능),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지원 불가. ⑭ 현지 교통비는 행선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개인이 명기하여 제출.
6	교통비 (국내개최 학술대회		(지침 9.5.1) · 정산 시 여정이 적인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 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	① 현지 교통비(예컨대 KTX 기차역에서 학술대회 장소까지의 택시비 등)는 지원 불가 함.
7	숙박비		(지침 9.5.4) · 국외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 최대 35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 국내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 최대 20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 숙박지원 ·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① 숙박비는 학술대회에 실제 참석한 기간에 발생한 내역만 지원. 즉 학술대회의 공식 일정은 화요일부터 목요일이지만, 참석자가 실제 참석한 날자는 수요일인 경우, 수요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협회는 실제 참석 여부를 일차적으로 항공권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고, 조식에 대한 별도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인정하고 별도의 조식 지원은 불가함. 단, 조식에 대한 별도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5만원에 해당 조식을 더한 가격(5만원 한도) 만큼만 지원함. ② 숙박에 대한 지원은 학술대회 참석에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숙박하는 경우에 한정.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사장소에 가장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 다만 그러한 곳에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또는 학술대회 공문을 첨부하여 차선으로 적합한 장소임을 설명해야 함. 다만, 국가가 다르거나, Google Map(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기준 이동시간(자동차 또는 대중교통 추

				천경로 최단시간 기준) 2시간 이상인 경우 확인서를 제출 하여도 지원 불가함. ③ 지침 9.5.4에서는 국내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의 최대금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참석자들의 거주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거주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하여는 숙박 지원이 불가함. 거주지에서 열리는 행사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내에 소재하는 시(市) 또는 군(郡)을 의미함. ④ 음료 또는 룸서비스는 식대 한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식대로 처리 가능. ⑤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통상 2인까지의 호텔비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호텔비의 최대금액 한도에서는 특별히 감액 없이 정산함. ⑥ 국외개최 학술대회 전일의 early check-in과 종료일 익일에 late check-out은 허용되지 않음. 즉 학술대회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최되어 화요일에 check-in을 토요일에 check-out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화요일에 비용이 추가되는 early check-in하거나 토요일에 비용이 추가되는 late check-out하는 것은 불가함(학술대회 당일에 early check-in하거나 종료일 당일에 late check-out 하는 것은 가능.) ⑦ 국외개회 학술대회 마지막 날 비행기 일정으로 인하여 late check-out 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1박을 더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단순 개인적 편의로 인하여 1박을 더 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숙박료를 50% 차감함. 즉, 금요일 22시 탑승시간일 때 금요일 late check-out을 이용하지 않고 토요일 check-out의 경우 ⑧ 협회 지원을 받지 못하는 Pre-course의 수강을 위한 숙박의 경우 숙박비의 지원은 불가함. 협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Pre-course 수강을 위한 숙박의 경우 지원 가능함. (Pre-course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비 부분 참고. Pre-course 참석을 위한 항공료의 경우에는 항공비 부분 참고.) ⑨ 숙박비 예약에 대한 여행사 수수료는 지원이 불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내의 카드 수수료는 지원 가능. ⑩ Stop-over(경유지 체류)의 경우 학술대회 지원 가능일에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1박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8	식비		(지침 9.5.3) · 식대는1일 3식을 기준으로 식사시간 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침 9.5.3 식사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1일 3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개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기입하여 제출함.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이 기입하여 제출함. ③ 현지 식당의 "현지"라 함은, 국외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같은 시(city)를 기준으로 하고,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시, 군, 구 중 최소 지역을 기준으로 함. ④ 현지 식당의 "식당"에 슈퍼마켓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입 내역이 식료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생필품 등 식품 이외의 품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⑤ 식대는 학술대회에 실제 참석한 기간에 발생한 내역만 지원. 즉 학술대회의 공식 일정은 화요일부터 목요일이지만, 참석자가 실제 참석한 시간은 수요일인 경우, 수요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협회는 실제 참석 여부를 일차적으로 항공권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 상 식사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에 대한 식사비만 정산함.(식사비를 전체 인원수로 나눈 금액). ⑦ Room service를 식대로 청구하는 경우 세금과 봉사료는 식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기타			① 참석자가 개인 사정을 사유로 학술대회를 참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하는 항공운임, 숙박비, 등록비 등의 취소·변경 수수료 및 또는 미환불금, 추가금액 등은 개인 부담으로 함. 단, 불가항력(전쟁, 천재지변,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의식불명, 사망의 경우 등 개별 사안 별로 협회가 판단하도록 함)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참석자는 학술 대회 참석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각종 협회 요구 서류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학술대회 대리 서명 불가)